

議案番號	第 6 號
議決年月日	2002. 9. . (第 回)

## 2001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提出者	瑞山市長
提出年月日	2002. 9. .

#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2002. 9. 3.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의 수입·지출업무에 반영·개선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골자

- 2001회계년도 결산현황(별첨)

## 첨부서류

-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결산검사 의견서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 순 서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	2
□ 결 산 검 사 개 요 -----	3
□ '2001세 입 · 세 출 결 산 현 황 -----	4
□ '2001결 산 검 사 결 과 분 석 -----	5
□ 검 사 결 과 지 적 사 항 -----	14
□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보 고 서 -----	33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서산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서산시의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200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01회계 연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11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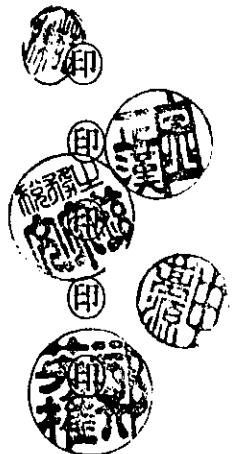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 단체 회계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01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 연도의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11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별첨 지적사항(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2002년 6월 일

서산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서산시의회의원	이	철	수
위	원	김	정	한
위	원	문	종	현
위	원	신	기	원
위	원	정	영	권



# 결 산 검 사 개 요

2001회계년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2001년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 법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므로 본 결산검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수치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와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계성으로 인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수치도 검증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중 수행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이었습니다만, 상기 내용외에 지정 및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로 후술하였습니다.

# 2001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명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세입(B) (B/A)	세출(C) (C/A)	잉여금(D) (B-C)
총계		271,720,387	272,669,729 (100.3)	201,387,232 (74.1)	71,282,497 (26.2)
일반회계		241,222,934	241,080,202 (99.9)	177,969,181 (73.8)	63,111,021 (26.2)
특별회계	소계	30,497,453	31,589,527 (103.6)	23,418,051 (76.8)	8,171,476 (26.8)
	상수도사업	12,068,579	12,117,580 (100.4)	10,307,915 (85.4)	1,809,665 (15.0)
	하수도사업	2,780,446	3,361,439 (120.9)	1,012,868 (36.4)	2,348,571 (84.5)
	주택사업	723,621	845,046 (116.8)	663,292 (91.7)	181,754 (25.0)
	공영개발	177,071	183,080 (103.4)	5,685 (3.2)	177,395 (100.2)
	구획정리	3,308,940	3,310,749 (100.1)	2,025,758 (61.2)	1,284,991 (38.8)
	주차장사업	1,414,171	1,282,592 (90.7)	244,450 (17.3)	1,038,142 (73.4)
	새마을소득	216,839	219,351 (101.2)	166,365 (76.7)	52,986 (24.4)
	의료보호	5,340,446	5,336,977 (99.9)	5,325,524 (99.7)	11,453 (0.2)
	영세민생활안정	208,692	272,088 (130.4)	55,000 (26.4)	217,088 (104.0)
	농공단지	3,659,723	3,983,090 (108.8)	3,103,990 (84.8)	879,100 (24.0)
	농촌발전	598,925	677,535 (113.1)	507,204 (84.7)	170,331 (28.4)

# 2001 결산 결과 분석

## □ 총 관

(단위 : 천원, %)

회계명	구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세 입(B) (B/A)	세 출(C) (C/A)	잉여금(D) (B-C)
총 계		271,720,387	272,669,729 (100.3)	201,387,232 (74.1)	71,282,497 (26.2)
일반회계		241,222,934	241,080,202 (99.9)	177,969,181 (73.8)	63,111,021 (26.2)
특별회계		30,497,453	31,589,527 (103.6)	23,418,051 (76.8)	8,171,476 (26.8)

○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현액 271,720,387천원으로서

- 총 예산현액의 100.3%인 272,669,729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의 74.1%인 201,387,232천원이 지출됨으로서 세입액의 26.2%인 71,282,49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음.

-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경우 241,222,934천원의 예산현액중 241,080,202천원이 수납되어 177,969,181천원을 지출하고, 63,111,02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30,497,453천원의 예산현액중 31,589,527천원이 수납되어 23,418,051천원을 지출하고 8,171,47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됨으로서 일반회계는 2000회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2000회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감소하였음.

## □ 세입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A)	결정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A)	미수납액(D) (B-C)	결손처분	이월액
총계	271,720,387	280,333,415 (103.2)	272,669,729 (100.3)	7,663,685 (2.8)	1,368,381 (21.7)	6,295,303 (82.1)
일반회계	241,222,934	247,159,868 (102.5)	241,080,202 (99.9)	6,079,665 (2.5)	1,368,381 (29.0)	4,711,283 (77.5)
특별회계	30,497,453	33,173,547 (108.8)	31,589,527 (103.6)	1,584,020 (5.2)	0	1,584,020 (100)

-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41,222,934천원보다 5,936,934천원을 초과한 247,159,86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41,080,20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6,079,665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1,368,381천원을 결손처분하고, 4,711,283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0,497,453천원보다 2,676,094천원을 초과한 33,173,54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1,589,52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584,020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B) (B/A)	지 출 액(C) (C/A)	이 월 액(D) (D/A)	불 용 액(E) (E/A)
총 계	271,720,387	208,043,500 (76.5)	201,387,232 (74.1)	52,806,663 (19.4)	17,526,492 (6.5)
일반회계	241,222,934	184,197,432 (76.4)	177,969,181 (73.8)	51,728,243 (21.4)	11,525,510 (4.8)
특별회계	30,497,453	23,846,068 (78.2)	23,418,051 (76.8)	1,078,420 (3.5)	6,000,982 (19.7)

- 일반회계 예산현액중 184,197,432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177,969,18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1,728,243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32,466,103천원, 사고이월 6,228,252천원,  
 계속비 13,033,888천원이며, 나머지 11,525,510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중 23,846,068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3,418,05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078,420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사고이월 428,017천원, 계속비 650,403천원이며,  
 나머지 6,000,982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 잉여금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 여 금	비 고
총 계	272,669,730	201,387,232	71,282,498	
일반회계	241,080,203	177,969,181	63,111,022	
특별회계	31,589,527	23,418,051	8,171,476	

○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71,282,498천원임.

- 일반회계의 잉여금중 명시이월은 32,466,103천원이고, 사고이월 6,228,252천원, 계속비이월 13,033,888천원, 보조금사용잔액 2,712,376천원, 순세계잉여금 8,670,403천원으로 총 63,111,022천원이 잉여금임.
- 특별회계의 잉여금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09,665천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 2,348,57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81,754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77,395천원, 구획정리특별회계 1,284,990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038,142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52,985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1,454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17,088천원, 농공단지특별회계 879,100천원, 농촌발전특별회계 170,331천원으로 총 8,171,476천원이 잉여금임.

□ 이월액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총 계	52,806,663	32,466,103	6,656,269	13,684,291
일 반 회 계	51,728,243	32,466,103	6,228,252	13,033,888
특 별 회 계	1,078,420	0	428,017	650,403

○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52,806,663천원임.

- 일반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32,466,10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6,228,252천원, 계속비 이월은 13,033,888천원으로 총 51,728,243천원이 이월되었음.
- 특별회계의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428,017천원, 계속비 이월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650,403천원으로 총 1,078,420천원이 이월되었음.

□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72,669,729	241,080,202	31,589,527
지방세		31,864,851	31,864,851	0
세외수입	소 계	81,662,577	56,441,224	25,221,353
	경상적세외수입	13,890,598	7,574,724	6,315,874
	임시적세외수입	67,771,979	48,866,500	18,905,479
지방교부세		74,905,800	74,905,800	0
지방양여금		20,884,065	20,884,065	0
조정교부금		6,649,010	6,649,010	0
보조금	소 계	56,703,426	50,335,252	6,368,174
	국고보조금	40,754,066	35,654,245	5,099,821
	시·도비보조금	15,949,360	14,681,007	1,268,353
지방채		0	0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01,387,232	177,969,181	23,418,051
인건비		22,701,209	21,848,762	852,447
물건비		22,530,519	20,540,817	1,989,702
이전경비		37,252,240	29,938,292	7,313,948
자본지출		105,816,891	98,931,676	6,885,215
융자및출자		896,600	0	896,600
보존재원		5,379,326	883,985	4,495,341
내부거래		5,588,486	4,755,486	833,000
예비비및기타		1,221,961	1,070,163	151,798

□ 세입금 불납 결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불납결손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타
계	1,368,382	376,621	0	5,699	986,062
일반회계	1,368,382	376,621	0	5,699	986,062
특별회계	0	0	0	0	0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미수납액	사유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타
계	6,295,304	256,128	54,719	1,943,626	1,250,658	2,790,173
일반회계	4,711,284	256,128	51,359	1,725,158	1,250,658	1,427,981
특별회계	1,584,020	0	3,360	218,468	0	1,362,192

□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말 현재액	2001년도 발생액	2001년도 소멸액	2001년말 현재액
합	계	4,482,519	1,352,234	895,237	4,939,516
일	반 회 계	132,000	98,758	0	230,758
특 별 회 계	소 계	4,350,519	1,253,476	895,237	4,708,758
	새 마을	708,300	158,000	200	866,100
	영 세 민	782,593	216,037	156,156	842,474
	여성발전복지	4,600	25,420	20,490	9,530
	주 택	2,098,809	21,803	421,172	1,699,440
	농 촌	754,278	830,757	296,884	1,288,151
	의 료 보 호	1,939	1,459	335	3,063

□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말 현재액	2001년도 발생액	2001년도 소멸액	2001년말 현재액
합	계	33,386,290	1,482,000	8,993,290	25,875,000
일	반 회 계	7,098,551	1,482,000	1,710,551	6,870,000
특 별 회 계	소 계	26,287,739		7,282,739	19,005,000
	공 기 업	19,103,966	0	3,967,966	15,136,000
	주 택	967,386	0	286,386	681,000
	농 공 단 지	6,216,387	0	3,028,387	3,188,000

□ 수지 및 재정력

구 분	현 년 도 (천원)	전 년 도 (천원)	증 감 (천원)	구 분	현 년 도	전 년 도
세입총액	241,080,202	191,947,538	49,132,664	자립도	36.62%	40.89%
세출총액	177,969,180	146,860,864	31,108,316	재정력 지 수	39.95%	39.95%
차인잔액	63,111,022	45,086,674	18,024,348	경상수지 비 율	45.08%	41.85%
조상총용 총 당 금				세입세출 총당비율	92.84%	93.44%
잉여금사용 채무상환액				지 방 채 상환비율	8.65%	9.67%
실질수지	63,111,022	45,086,674	18,024,348	재정계획 운영비율	93.84%	94.48%
1 인 당 재정규모	1,182	977	205	세입예산 반영비율	99.80%	99.80%
1 인 당 세부담액	1,601	1,277	324	투 자 비 비 율	90.00%	76.03%
채무현재액	6,870,000	5,556,204	△1,313,796	자체수입 증 감 율	90.11%	90.11%
적립금총액	753,533	402,254	351,279	경상경비 증 감 율	110.35%	98.20%

# 검사결과지적사항

## 1.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계상

### ○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 수 율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대비
700,000	3,887,031	766,948	3,120,083	109.5%	19.7%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일반회계 세입중 과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과소계상되어 지적한바 있으나, 2001회계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예산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과년도의 47.8%에 비해 양호한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과년도 7.8%보다는 높으나 아직도 미흡함.

### ○ 조치의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수가능액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편성과정에서 전년이월액이 과년도 수입예산에 누락됨이 없도록 점검하여 반복적인 실수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 2.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과다발생

### ○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계	이월액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일 반	241,080,203	177,969,181	63,111,022	51,728,243	2,712,376	8,670,403
특 별	31,589,527	23,418,051	8,171,476	1,078,420	2,141	7,090,915
계	272,669,730	201,387,232	71,282,498	52,806,663	2,714,517	15,761,318

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추계가 얼마나 정확한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 세입의 추계가 부정확하여 세입결산액이 272,669,730천원에서 세출결산액이 201,387,232천원의 사용으로 세입예산의 73.8%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이 어려움에도 잉여금이 71,282,498천원(26.2%)이 발생한 것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미흡한 사실이 있으며 현안사업의 지연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결과를 초래함

### ○ 조치의견

세입결산액과 예산액과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나 26.2%나 적게 책정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는 인구의 증가 및 경제성장률 등 시세확충요인과 1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을 정확히 분석하고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으로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3. 세입결산 미수납액 과다발생

#### ○ 현 황

(단위 : 천원)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비 율	미수납액 내역	
				결손처분	이월액
280,333,415	272,669,730	7,663,685	2.73%	1,368,382	6,295,304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 내의 세입분야에 있어 징수결정한 세액은 완전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이 2.73%를 차지하고, 특히 미수납된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이 3,120,080천원으로 70.7%를 차지하고 결손처분액 1,368,382천원 중 과년도분 결손처분이 1,245,750천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미흡함

#### ○ 조치의견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채권 확보등 현실적인 수납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4. 세출결산의 이월액·불용액 과다

○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비율	불용액
271,720,387	208,043,501	201,387,232	52,806,663	19.4%	17,526,492 (6.5%)

건전재정 운영과 각종 사업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월액의 발생비율이 전체 세출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출예산의 정확한 계획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일부 아래도표와 같이 예를 들면

(단위 : 원)

구분	불용액	비고
합계	984,407,570	
인건비 (예산관리)	188,955,520	기본급 : 98,595,570 수당 : 90,359,950
복리후생비(예산관리)	66,158,790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예산관리)	73,300,000	
의료및구호비 (보건위생관리)	44,626,260	
일시사용인부임 (환경관리)	17,784,000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경상예산)	593,583,000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이나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승급의 경우도 기간이 되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각 부서에

서 예산편성시 충분히 숙지하여 불용액수를 낮출 수 있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 예산액의 25.9%인 73,300,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비율이 높는데 이는 시홈페이지나 시보등을 통해 미리 고지를 하여 정보부족으로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없도록 형평성에 신경을 쓰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수요증가에 대처해야 하는데도 그 노력이 부족하며, 의료 및 구호비의 불용액도 예산액의 15%로 나타났는 바 이는 향후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서비스 증가 및 수요발생 증가를 예상하고 대처해야 함에도 불용액비중이 너무 높고,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예산액의 5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산림자원개발 예산의 경우도 추경예산편성시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  
그 외에도 세무관리의 기타보상금 불용액이 42%로 비율이 높아 시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사실이 있음

#### ○ 조치의견

예산편성시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합목적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재정을 이루고 예산편성시 재정효과 등 구체적인 분석을 기초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5.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영 부적정

### ○ 현 황

《일반회계 2000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및 2001 국·도비 보조금 반환현황》

(단위 : 천원)

2001년도 예산액	2001년도 반환액	2000년도 결산액	예산대결산 차액	불용액	불용율
1,282,996	1,065,161	1,177,544	105,452	217,835	17.0%

국·도비 보조금 반환의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용잔액만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00 회계연도 결산액보다 105,452천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2001 회계연도 반환금 예산액 대비 217,835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 예산운영이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

### ○ 조치의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편성시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당해연도에 반환되는 금액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6. 세입금 불납결손 부적정

### ○ 현 황

(단위 : 천원)

계	무 재 산	시효완성	공매 무매당	비 고
1,368,381	376,621	5,699	986,061	

불납결손 내용이 대부분 사전 채권확보등 철저한 조치가 선행될 경우 불납 결손액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많은 불납 결손액이 발생한 것은 채권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이 미흡함

### ○ 조치의견

채납자에 대한 재산발굴등 보다 철저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 불납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채권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7. 도축세 부과 부적정

### ○ 현 황

(단위 : 두)

도 축 현 황			과 세 현 황		
계	소	돼 지	계	소	돼 지
31,216	3,449	27,767	31,224	3,430	27,794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원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축세 부과를 보면 도축수와 과세현황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소는 19두를 적게 부과하였으며, 돼지는 27두를 많이 부과하여 과세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 ○ 조치의견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세금부과를 위하여 해당부서간 자료 통보등 절차를 점검 통보토록 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첨부 1. 도축세 부과현황 1부.  
2. 도축현황 1부.

## 2001년도 도축세 월별 부과현황

(단위 : 원)

월 별	부과금액	도축두수	소		돼 지	
			두 수	금 액	두 수	금 액
계	145,388,060	31,224	3,430	100,064,050	27,794	45,324,010
1월	22,703,360	3,044	665	19,158,650	2,379	3,544,710
2월	8,670,950	2,299	192	5,531,520	2,107	3,139,430
3월	10,102,460	2,618	227	6,539,870	2,391	3,562,590
4월	9,538,720	2,368	220	6,338,200	2,148	3,200,520
5월	10,464,620	2,366	254	7,317,740	2,112	3,146,880
6월	9,315,190	2,383	211	6,078,910	2,172	3,236,280
7월	11,211,720	2,532	243	7,183,080	2,289	4,028,640
8월	12,503,680	2,808	272	8,040,320	2,536	4,463,360
9월	20,182,960	3,096	530	15,666,800	2,566	4,516,160
10월	9,769,160	2,281	207	6,118,920	2,074	3,650,240
11월	11,120,680	2,733	227	6,710,120	2,506	4,410,560
12월	9,804,560	2,696	182	5,379,920	2,514	4,424,640

## 8. 다목적회관 예산편성 부적정

### ○ 현 황

다목적회관 건립 예산 : 700,000천원

다목적회관 건립은 사업 성격상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나 자체사업이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오는 보조금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하지 못함.

### ○ 조치의견

사업의 완급이나 예산편성 지침등을 숙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 9. 해미 정주권 개발예산 집행 부적정

### ○ 현 황

예산액 : 50,000천원

지급액 : 40,000천원

잔 액 : 10,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도의 승인을 받아 용역계약을 하여야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나 도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계약을 하여 40,000천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적절치 못함

### ○ 조치의견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한 계산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선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 특히 도의 승인이 안될 경우 선 예산집행은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10. 주부 인터넷 교육비 예산운영 부적정

### ○ 현 황

(단위 :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비 고
4,000	2,000	1,000	1,000	

주부 인터넷 교육비 전액을 반납한 것은 사전에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함

### ○ 조치의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정확한 교육수요조사에 의해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수혜자에게 국가시책 또는 지방시책이나 미래 정보화 교육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에도 적당히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 예산을 요구하여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1.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 ○ 현 황

예 산 액 : 3,659,723,000원

징수결정액 : 5,308,807,620원

징 수 액 : 3,983,090,49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예산액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 과소 책정되어 세입결산이 부적정함.

### ○ 조치의견

징수 가능액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 12. 예비비 지출결정 집행잔액 과다

### ○ 현 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율
4,040,557	2,091,718	1,464,864	8,924	617,930	29.5%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호우피해 복구, 한해용수개발, 구제역 예방, 폭설피해 복구 등의 보편적인 자연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결정을 하였으나 불용율이 29.5%로 사업량을 과다예측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총규모의 1%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1)

구제역 예방지출 결정액 : 208,900천원

구제역 예방 지출액 : 196,003천원

구제역 예방 불용액 : 12,897천원

(사례2)

폭설피해 복구비 지출결정액 : 1,002,253천원

폭설피해 복구비 지출액 : 408,820천원(이월액 8,924천원 포함)

폭설피해 복구비 불용액 : 593,433천원

특히 폭설피해 복구비중 해양관리비 313천원은 지출결정만 하고 집행실적이 없어 예비비 지출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 조치의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목적사업에 전력하여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3. 세입미수금 고질채납자 선정 및 관리 불철저

#### ○ 미수납금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고질적 체납액(미수납액)	비 고
지 방 세	1,189,155천원	지방세미수납액 3,046,945천원의 39%
국유재산임대료	8,513,000	세 의 수 입
공유재산임대료	10,443,000	
도로 사용료	2,813,000	
시장 사용료	10,558,000	
국유재산임대료	21,996,080	과 년 도 수 입
공유재산임대료	35,305,860	
도로 사용료	5,138,500	
시장 사용료	2,433,150	

상기와 같이 고질채납 또는 미납부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수익케 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국·공유재산이 효율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 조치의견

임차인의 선정과정에서 수수료 등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예를들어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 재산확보 등)를 하고, 세입확보 가능한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등을 사용 수익케 하여야 하며, 과년도 수입 등 미수납액 회수를 위하여 채납자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14. 특별회계 채권계상 누락

###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2000년결산서상 이 월 액	2001년결산서상 이 월 액	차 액
합 계	2,143,451,200	1,543,409,270	600,041,930
영 세 민	866,940,100	782,592,620	84,347,480
여성발전복지기금	238,160,000	4,600,000	233,560,000
농 촌	1,034,996,100	754,278,080	280,718,020
의 료 보 호	3,355,000	1,938,570	1,416,430

위 자료와 같이 2001년 결산서상 전기 이월액에 계상한 내용과 2000년 채권 이월액과 차액이 600,041,930원이 발생함

### ○ 조치의견

결산서 작성에 있어 전년도 결산서상 이월액 등 장부를 정확하게 대조하여 누락되는 부분은 계상하기 바람

##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숙

###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이월액	2001년결산서상 수납액(과년도수입)	세입예산누락액
합 계	1,442,846,390		1,227,418,300
주 차 장	144,610,000	징수결정액만 69,989,700	74,620,300
새마을주민소득	1,300,000	현년도융자금회수금 200,000원	1,300,000
의 료 보 호	1,655,020	누 락	1,655,020
영세민생활안정	6,303,500	누 락	6,303,500
농 공 단 지	1,239,923,740	과년도수입 117,083,360원	1,122,840,380
농 촌 발 전	20,699,100	누 락	20,699,100

특별회계 2000년 이월액을 2001년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주차장·농공단지특별회계의 경우 과년도 수입으로 실제수납액만 표시하므로 세출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음

### ○ 조치의견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월액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누락된 예산은 재확인하여 예산편성토록 하기 바람

## 16. 세입·세출 결산서 일부 작성 부실

### ○ 현 황

1.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성과정에서 일부 숫자의 탈자·오자 또는 누락사항 등이 있음

### ○ 조치의견

결산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고 명백히 작성토록 하기 바람

#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제시 번호	지 적 사 항	처 리 부 서	비 고
1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계상	세 무 과	
2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과다발생	기획감사담당관실	
3	세입결산 미수납액 과다발생	세 무 과	
4	세출결산의 이월액·불용액 과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농림과, 보건소,	
5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영 부적정	기획감사담당관실	
6	세입금 불납결손 부적정	세 무 과	
7	도축세 부과 부적정	세 무 과	
8	다목적회관 예산편성 부적정	자 치 행 정 과	
9	해미 정주권 개발예산 집행 부적정	건 설 과	

계시 번호	지 적 사 항	처 리 부 서	비 고
10	주부 인터넷 교육비 예산운영 부적정	기획감사담당관실	
11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지 역 경 제 과	
12	예비비 지출결정 집행잔액 과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3	세입미수금 고질체납자 선정 및 관리 불철저	세 무 과	
14	특별회계 채권계상 누락	세 무 과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숙	자치행정과, 사회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교통행정과	
16	세입·세출 결산서 일부 작성 부실	회 계 과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계상	<p>○현황</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단위 : 천원)</td> </tr> <tr> <td>예산</td> <td>정 수</td> <td>실 계</td> <td>정 수 율</td> </tr> <tr> <td>현액</td> <td>결정액</td> <td>미수납액</td> <td>현액대비 결정액대비</td> </tr> <tr> <td>700,000</td> <td>3,887,031</td> <td>766,948</td> <td>3,120,083</td> </tr> <tr> <td></td> <td></td> <td></td> <td>109.5%</td> </tr> <tr> <td></td> <td></td> <td></td> <td>19.7%</td> </tr> </table> <p>○과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이 정수결정액에 비하여 과소계상 되었으며, 정수결정액 대비 정수율은 전년도의 7.8%에 비해 높으나 아직도 미흡함.</p> <p>○정수 가능액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수대책을 강구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 이월액이 과년도 수입예산에 누락됨이 없도록 점검.</p>			(단위 : 천원)		예산	정 수	실 계	정 수 율	현액	결정액	미수납액	현액대비 결정액대비	700,000	3,887,031	766,948	3,120,083				109.5%				19.7%	<p>○채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형별 정수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월별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 채납액 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채납액 정수율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과년도 예산액은 매년 정수 평균액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으로,</p> <p>○정수 가능액을 심층분석하여 정수율을 높이고 과년도 수입이 예산현액에 적정하게 누락됨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p>	세 무 과	여
		(단위 : 천원)																											
예산	정 수	실 계	정 수 율																										
현액	결정액	미수납액	현액대비 결정액대비																										
700,000	3,887,031	766,948	3,120,083																										
			109.5%																										
			19.7%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2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과다발생	○ 2001년도 세출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71,282,488천원 (26.6%)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에 미흡하여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결과를 초래함.	○ 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절대공기 부족과 협의지연 등으로 집행지 못한 이월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연도에 정상집행 되어 자금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3	세입결산 미수납액 과다발생	<p>○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자주제원의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 내의 세입분야에 있어 징수결정된 세액은 완전 징수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이 2.7%나 차지하고,</p> <p>○ 특히 미수납된 지방세종 과년도 수입이 3,120,080천원으로 70.7%를 차지하고, 결손처분액 1,368,382천원중 과년도 결손처분이 1,245,750천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제원 확충 노력이 미흡함.</p>	<p>○ 자주제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액의 100% 징수키 위하여 전 세무행정을 집중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징수반은 5개조를 상시 편성 운영하고,</li> <li>- 특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제체납 처분반을 1개조로 운영하고 있음.</li> </ul> <p>(상반기 실적 : 형사고발 5건, 관허사업한 7건, 부동산압류 588건, 강제공매 33건 등)</p> <p>○ 고질체납자의 사전 전국계산조회 등을 통하여 계산을 파악 즉시 압류하여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액을 최소화하여 자주제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p> <p>(상반기 재산조회 채권확보 상황 : 153,095건)</p>	세 무 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담당관실	조치 결과 여부
4	세출결산의 이월액 · 불용액 과다	○ 2001년도 세출결산 결과 세출예산액의 19.4%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6.5%가 불용 처리된 것은 시계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	○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과 협의 지연으로 집행치 못한 이월사업의 증가로 이월액이 증가함.  ○ 앞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된 연도에 정상집행 되도록 하고, 또한 예산편성시 재정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4	<p>세출결산의 이월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액 과다</li> </ul>	<p>○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이나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승급의 경우도 기간이 되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액의 50%인 17,78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음.</p>	<p>○ 일시사역 인부 사역시기, 사역인원 등을 적정하게 검토,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p>	환경보호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	세출결산의 이월액 · 불용액 과다	추경예산편성시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	○ 세출예산의 불용액 대부분은 폭설피해시설 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을 사업자가 포기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농 립 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4	세출결산이 이월액 · 불용액 과다	○ 2001년 일반회계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과목이 세출 결산상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불용액:44,626,230] 예산운용 및 집행에 비효율성 초래.	○ 예산편성요구시 사전 종합적인 사업분석으로 사업량을 산출 계상하고, ○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과다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보 건 소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5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영 부적정	○ 보조금반환금 예산의 편성시에는 전년도에 결산을 근거로 편성하여야 하나,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결산액보다 105,452천원을 과다 편성하여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함.	○ 2000년도 결산액을 근거로 2001년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1999년도 결산후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반환금중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일부 미 반환된 사업비의 반환을 위해 추가 편성함.  ○ 당해연도에 반영된 반환금 예산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반환되도록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6	세입금 불납결손 부적정	<p>○현황</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계</td> <td style="padding: 2px;">무채산</td> <td style="padding: 2px;">시효완성</td> <td style="padding: 2px;">공매무배당</td> </tr> <tr> <td style="padding: 2px;">1,308,381</td> <td style="padding: 2px;">376,021</td> <td style="padding: 2px;">5,099</td> <td style="padding: 2px;">986,001</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20px;">(단위 : 천원)</p> <p>불납결손 내용이 대부분 사전 채권확보등 철저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불납결손액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많은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것은 채권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이 미흡함.</p>	계	무채산	시효완성	공매무배당	1,308,381	376,021	5,099	986,001	<p>○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체납 전산망을 통한 전국제산조회 6,505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 3,410건, 금융기관에 예·적금 조회 1,012건 등을 하여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처분 하였고, 관허사업제한 7건, 신용불량자등록 30건, 조세범고발 5건등 체납자에 대해 조치하였음.</p> <p>○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신속히하여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액이 불납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음.</p>	세 무 과	여
계	무채산	시효완성	공매무배당										
1,308,381	376,021	5,099	986,001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7	도축세부과 부적정 현황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도 축 현 황</th> <th>과 세 현 황</th> </tr> <tr> <th>계 소</th> <th>계 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1,216</td> <td style="text-align: center;">27,76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439</td> <td style="text-align: center;">3,4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1,224</td> <td style="text-align: center;">27,794</td> </tr> </tbody> </table> <p>2001년도 도축세 과세현황에서 도축수와 과세현황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소는 19두를 적게 부과하였으며, 돼지는 27두를 많게 부과하여 과세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p> <p>○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세금부과를 위하여 해당 부서간 자료 통보 등 철차를 점검 통보하도록 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p>	도 축 현 황	과 세 현 황	계 소	계 소	31,216	27,767	3,439	3,430	31,224	27,794	<p>○ 2001년도 도축세 과세와 관련하여 도축수와 과세현황이 다른 것은 도축세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을 위한 자료가 상·하반기 종료후가 아닌 반기중에 작성되기에 6월과 12월달은 잠정적으로 추계 작성하여 도축수와 과세현황이 차이가 남.</p> <p>※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상·하반기 두번 결정되며 매년 1월1일과 7월1일부터 변경된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함.</p> <p>○ 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후 도축세 신고자료와 축산해양과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음.</p>	세 무 과	여
도 축 현 황	과 세 현 황														
계 소	계 소														
31,216	27,767														
3,439	3,430														
31,224	27,794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8	다목적회관 예산 편성 부적정	○ 다목적회관 건립은 사업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야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나 상급기관으로 부터 오는 보조금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건전계정 운영을 하지 못함.	○ 3회추경에 예산편성한 다목적회관 건립예산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사업으로 마련되어 편성된 것이나, 추후 유사사업 등의 예산편성시 사업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계정운영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9	해미 정주권 개발 예산 집행 부적정	○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후 도의 승인을 받아 용역계약을 하여야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나 도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계약을 하여 40,000천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적절치 못함.	○ 예산을 집행할 경우 예산을 낭비하거나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건 실 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담당인사	조치 결과 여부
10	주부인터넷 교육비 예산운영 부적정	○ 주부인터넷 교육비 4,000천원을 전액 반납한 것은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업이 불가능 하게 되어 수혜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음.	○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원측과 협의한 결과 이윤이 없다는 이유로 주부인터넷 교육이 중단 되었었음.  ○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시비를 더 부담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1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예산액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 과소 책정되어 세입결산이 부적정함.	○ 차후에는 징수 결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지역경제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2	예비비 지출결정 집행잔액 파다	○ 예비비 지출 결정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 하여야 하나 호우피해 복구, 한해용수개발, 구제역 예방사업 등을 위해 지출결정된 예비비중 지출 결정액의 29.5%가 불용처리되어 예비비지출 결정 취지에 어긋남.	○ 폭설피해 복구등을 위해 구체적인 산출기초로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였으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출결정된 피해복구사업의 경우 보조를 받아야할 민간인이 자력으로 복구를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앞으로는 보조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민간 에게 사전에 주지시켜 예비비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기획감사 담당관실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세입미수금 고질 채납자 선정 및 관리 불철저 (지방세)	○ 미수납금 사유별 현황 - 고질적 채납액(미수납액) 1,189,155천원 상기와 같이 고질채납자 관리 불철저	○ 채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고질채납자에 대한 강력한 채납처분 등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 하고 있음.  - 신규 고액 채납자를 매월 확인하여 채납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채권 확보,  - 장기 채납자 압류재산 채권분석 및 공매 처분 확행(부동산 11건, 자동차 9건)  - 채납차량 일제단속 실시(번호판영치 및 차량 공매) : 126건  - 채납자에 대한 행정체제 : 관허사업제한 7건, 신용불량지동록 30건, 출국제한 1건, 형사고발 5건  - 징수불능분의 과감한 결산처분	세 무 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3	세입미수금 고질 체납자 선정 및 관리 불철저 (세외수입)	○ 고질체납자 또는 미납부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 수익케 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국·공유 재산이 효율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체납자에 대한 체권확보와 대부계약시 임대 료에 대한 완납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지방세 체납액 정리시 세외수입 체납액도 병행하여 징수 추진.	세 무 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4	특별회계 채권계상 누락	○ 2001년 결산서상 전기 이월액에 계상한 내용과 2002년 채권 이월액과 차액이 600,041,930원이 발생함.	○ 해당 실·과로부터 채권누락 원인을 파악한 결과 착오 기재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채권관리 및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음.	세 무 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신과	조치 결과 여부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숙	○ 새마을주민소득특별회계 2000년도 이월액 1,300천원을 2001년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세입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음.	○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월액 등의 세입·세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착오없도록 하겠음.	자치행정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숙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000년 이월액을 2001년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에 누락되었음.	○ 차후에는 이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회여성 복지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여부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숙	<p>○ 특별회계 2000년 이월액을 2001년 과년도 수입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에 전액 반영 되지 않았고, 과년도 수입으로 실제 수납액만 표시하므로 세출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음.</p>	<p>○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전액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p>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춘발전특별회계 2000년 이월액 20,669,100원을</li> <li>2001년 과년도 세입예산으로 처리해<sup>다</sup> 하나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li> </ul>	농 립 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도 이월액 : 144,610,000원</li> <li>○ 2001년도 결산서상 수납액(과년도수입) : 69,989,700원</li> <li>○ 세입결산누락액 : 74,620,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과년도 수입으로 실제 수납액만 표시하므로 세출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점사시 지적된 2001년도 결산서상 누락액 74,620,300원은 적법하게 세입예산에 반영 되었으며,</li> <li>○ 다만 착오로 인하여 결산서상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li> </ul>	교통행정과	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당실과	조치 결과 여부
16	세입·세출 결산서 일부 작성 부실	<p>○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성관리과정에서 일부 숫자의 탈자·오자 또는 누락사항 등이 있음.</p> <p>○ 결산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고 명백히 작성토록 하기 바람.</p>	<p>○ 일부숫자의 탈·오자 또는 누락등을 교정 하였으며,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회 계 과	여